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2017. 2. 15(수) 발신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재청원서 포함 총 14 쪽)

공동운영위원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010-3333-3436 yumhc@kfem.or.kr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010-2279-4251 ngo8518@pspd.org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choiyy@kfem.or.kr

사무국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010-4220-5574 taijist@pspd.org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국장 010-4725-9177 jopan@kfem.or.kr

임홍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 010-3724-9438 mzzlim@hanmail.net

보도자료

피해자들, 15일 옥시 측 증거 위조한 '김앤장' 대한변협에 징계 재청원

- 오늘(15일) 대한변협에 김앤장을 '증거위조죄 · 위조증거사용죄' 징계개시 신청 재청원
- 지난해 10월 20일 피해자들의 김앤장 징계 진정, 서울변호사회가 지난 3일 기각 통보
- 진실 은폐 · 거짓 진술 · 허위 증거 제출 금한 "변호사법 ·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혐의도

* 기자회견 및 재청원서 접수 일정 : **2.15(수) 12:00 · 대한변호사협회 앞**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1층 우리은행 빌딩)

< 개요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한변협에 '김앤장 징계' 재청원 접수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 2017. 2. 15(수) 12:00 · 대한변호사협회(서울 강남 테헤란로 124) 앞

■ 주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문의 : 장동엽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대응T/F 선임간사

010-4220-5574 taijist@pspd.org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가 오늘(15일) 오후 12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와 옥시 측 변론팀 변호사 등에 대해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혐의로 징계해 줄 것을 재청원합니다. 이는 지난 해 10월 20일,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이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를 조작하는데 관여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등 형법상

증거위조죄와 위조증거사용죄는 물론,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한 혐의로 김앤장을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징계 청원했으나, 지난 3일 기각 통보를 받아 변호사징계규칙 제12조에 따라 대한변협에 재청원하게 됐습니다.

2.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만들어 팔아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지난 2011년 잇따른 민·형사사건의 수사 및 소송 과정을 맞게 되면서 김앤장은 옥시 측의 법률 대리를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명행 교수(서울대 수의학과)과 유일재 교수(호서대 식품영양학과)에 옥시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옥시 제품의 인체 유해성 실험 결과를 조작해 보고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같은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는데 김앤장이 깊이 관여하고 주도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에서도 이같은 정황이 제기되었으며, 조명행과 유일재의 1심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또한 지난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대표 신현우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7년을 선고하고, 외국인 대표였던 존리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3.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김앤장의 이같은 행위가 형법상 증거위조죄 또는 위조증거사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변호사법 제24조, 의뢰인의 범죄나 위법 행위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하거나 이를 의심 받을 행위를 금한 변호사 윤리 장전 제11조, 재판 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 제출을 금한 변호사 윤리 장전 제36조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해 10월 서울변회에 징계를 청원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증거가 충분치 않아 김앤장 측의 답변에만 기댄 나머지 결국 기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정황들이 있음에도 징계할 수 없다고 결정한 서울변회의 판단을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에 속한 단체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4. 2011년 우연히 밝혀진 참사의 주범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기업들이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옥시 영국 본사의 주도로 서울대와 호서대의 전문가들까지 가담해 그 증거들을 조작 은폐했고, 어처구니 없게도 대한민국 법원은 교통사고 쌍방 과실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 처리해 버렸습니다. 대참사는 그렇게 덮힐 뻔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그저 죽음의 생활화학물질 때문에 빚어진 참사가 아니라, 법조계의 썩은 비리 사슬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까닭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제 법조계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법조 비리는 그저 영화나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니라, 흔하디 흔한 현실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고 법조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김앤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그 책무를 서울변회에 이어 대한변협에 맡기려 합니다.

5. 지난 2월 9일 현재, 피해자 수는 모두 5,432 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131 명에 이릅니다(이는 정부의 공식 피해 접수기관인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이 국회에 보고한 피해 현황에 정부가 그동안 모니터링 대상에서마저 제외한 판정 이후 사망한 4단계 피해자의 현황을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종합한 결과임).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대참사입니다.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사회적 참사'를 마주한 우리 사회는 이제라도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 국회,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에 이어, 변호사단체들에도 거듭 책임을 물고 있는 이유입니다. ■

▣ 불임) 오늘(1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한 (재)청원서 전문

청원서

진정인	성명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을 대표해)
	주소 및 우편번호	[03184]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2 피어선빌딩 409호
	연락처	010-5618-0554 / okdm@naver.com
	성명	안진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를 대표해)
	주소 및 우편번호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연락처	010-2279-4251 / ngo8518@pspd.org
피진정인 ¹	성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주소 및 우편번호	[03170]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세양빌딩 등
	연락처	- 대표전화 : 02-3703-1114 - 팩 스 : 02-737-9091, 9092 - 대표메일 : lawkim@kimchang.com
	성명	장지수 (김앤장 소속 변호사, 변론팀장)
	성명	이성규 (김앤장 소속 변호사)
	성명	조하윤 (김앤장 소속 변호사)
	성명	이우진 (김앤장 소속 변호사)
	성명	이승윤 (김앤장 소속 변호사)
	성명	김유정 (김앤장 소속 변호사)
	성명	김재정 (김앤장 소속 변호사)
	성명	김정연 (김앤장 소속 변리사)

¹⁻ 피진정인 중 변호사들의 신상 정보는 아래 <붙임> 참고. 김앤장의 변론팀 구성원이 더 있을 수 있음.

1. 피진정인과의 관계

진정인 중 강찬호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의 대표입니다. 가피모는 피진정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 소속 변호인들이 법률 대리를 맡아온 유한회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²)가 만들어 판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옥시싹싹')과 같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사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 당사자 또는 가족들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족과 피해자들이 구성한 단체입니다.

진정인 중 안진걸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의 공동운영위원장 중 한 명으로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가습기참사넷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도와 참사의 진상과 피해를 낱낱이 밝히고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6월 20일에 출범한 시민사회의 연대 단체입니다.

옥시싹싹의 인체 유해성을 내용으로 한 조명행 교수(서울대학교 수의학과)와 유일재 교수(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만으로 위조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옥시 측 사이의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옥시 측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과정 등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데까지 김앤장 측이 깊이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 과정에 제출된 결정적 증거들을 위조토록 한 김앤장의 행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³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가해기업 옥시와 관련된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책임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제2, 제3의 참사를 막기 위해 사회적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 또한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너무나 오랜 기간 온갖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 소속 단체들은 관련 법제들에 근거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지난 해 10월 20일 김앤장과 그 소속 변호사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히 물어 철저히 징계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진정 제2016-450호). 그러나 서울변호사회가 보내온 기각 통보서를 지난 3일 받아 변호사징계규칙 제12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재청원합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²⁻ 1990년부터 2005. 5. 31.까지 주식회사 옥시, 2005. 6. 1.부터 2011. 12. 11.까지 주식회사 옥시레킷벤키저, 2011. 12. 12.부터 현재까지 유한회사 옥시레킷벤키저로 상호가 변경되어 왔음.

³⁻ 지난 10월 14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가 4,893 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1,012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가습기참사넷 기자회견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000명 넘어섰다>, 2016.10.17](#))

1) 조명행 교수의 범죄 사실을 토대로 본 사실 관계⁴

옥시는 2000~2011년까지 'SKYBIO1125(주성분 PHMG-p⁵)'를 주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옥시싹싹'을 적어도 450만 개 이상 제조·판매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손상⁶ 질환으로 사상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질본)는 2011. 8. 31.경 역학조사에 따른 중간 조사 발표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손상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옥시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에도 제품 출시를 자제토록 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손상 환자 및 그 유족 등 피해자들은 옥시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에 질본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예견됐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옥시는 민·형사사건을 대비한 대응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옥시싹싹에 대한 흡입독성실험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특히 2011. 11.로 질본의 동물흡입독성실험결과 발표에 맞추어, 옥시는 2011. 9. 20.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호서대)과 연구비 1억 원 규모의 '가습기살균제의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계약을, 2011. 9. 3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대)과는 연구비 2억 5천만 원 규모의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 평가' 연구 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한편 옥시는 위 연구계약들과는 별도로 2011. 9. 21.에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운영기준)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orea Conformity Laboratories)과 흡입독성실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옥시싹싹 흡입독성실험을 했습니다. KCL의 급성흡입독성실험 및 28일 반복흡입독성실험을 통해 옥시싹싹이 폐병변을 유발할 수 있는 흡입독성을 지녔음이 확인됐습니다. 연구용역과 실험을 진행한 조명행 교수와 유일재 교수는 물론, 옥시 측 또한 KCL의 자문회의 참석 등을 통해 위 실험 결과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위와 같이 2011. 9. 30. 서울대와 옥시 사이에 체결된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 평가' 연구계약의 연구책임자로 지정됐고, 이 연구를 총괄해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연구는 큰 쥐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는데, 옥시싹싹을 수돗물 대비 0.5%(저농도, 권장사용량), 1%(중농도, 권장 사용량의 2배), 2%(고농도, 권장 사용량의 4배) 함유한 물질을 분무하는 실험군과 수돗물만을 분무하는 대조군을 설정하여 암·수 일반 개체를 이용한 2, 4, 13주의 반복흡입독성실험과 임신 개체를 이용한 임신 3주, 출산 후 2주, 출산 후 5주의 생식독성실험을 함께 진행한 뒤, 연구책임자인 조명행 교수가

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고합487> 판결문 참조.

⁵- Polyhexamethyleneguanide-phosphate 의 약자.

⁶-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역학조사과에서는 2011. 11. 11.자 '주간 건강과 질병'을 통하여 '원인 미상 폐손상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함. 위 발표문에는, "원인 미상 폐손상은 발생신고 초기에는 소아에서 유사질환이 급성 간질성 폐렴(acute interstitial pneumonia)으로 분류되었던 것을 참고하여 '급성 간질성 폐렴'으로 이름붙였다가 조직학적 소견의 차이로 인해 5월 중순 '원인 미상 중증폐렴, 폐질환'으로 질병의 명칭을 변경함. 이후 임상적 소견과 미생물 검사결과 감염성 질환의 가능성이 낮고 흡입에 의한 폐손상(inhalation lung injury)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유사 사례 수집 결과 중등도(moderate)의 증상을 보인 사례들이 확인됨에 따라 현 단계에서 본 질환의 잠정적 명칭은 '원인미상 폐손상'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감찰의 수사기록 951쪽). 이에 따라 이하 '폐손상'으로 표현함.

하나의 최종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서울대를 통해 옥시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조명행 교수의 연구과제 실험이 진행되던 2011. 10. 24. 서울대 수의과대학의 조 교수 연구실에서, 당시 옥시 연구소 직원인 최은규로부터 “2011. 11. 질본의 결과 발표 일정에 맞추어 실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흡입독성실험을 빨리 진행하면서 해당 실험으로 옥시싹싹이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될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점과 가습기 사용자들에게 발생한 폐손상이 옥시싹싹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됩니다. 조명행 교수는 그 대가로 옥시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모두 1,200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조 교수는 2011. 11. 중순쯤 이 연구로 옥시싹싹에 생식독성이 있음을 확인했고, 이 사실을 옥시에 알려줬습니다. 옥시 측에서는 생식독성실험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은폐할 의도로 직원 최은규를 통해 조 교수에게 당초 하나의 실험 계획으로 진행된 일반흡입독성실험과 생식독성실험을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교수는 옥시 측 요구를 받아들여 참여 연구원인 권정택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실험을 분리하여 진행한 것처럼 2개의 실험계획서를 작성토록 한 뒤, 2011. 12. 중순쯤 이를 옥시에 보내줬습니다.

이후 조 교수는 옥시로부터 일반흡입독성실험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옥시싹싹으로 인한 유의성 있는 폐병변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장애가 되는 각종 실험 결과를 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 교수는 2012. 3.부터 2012. 4. 사이에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차별적 병변을 관찰할 수 없었다. 폐장(肺臟)에서 실험물질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병변이 암·수 모든 동물에서 관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결론 내리면서 2, 4주 일반흡입독성실험의 조직병리검사 결과 확인된 ‘간질성 폐렴(Interstitial Pneumonia, diffuse)’ 데이터와 4주 일반흡입독성실험 후 탈이온수(Deionized Water)를 이용하여 추가 시행한 대조군 실험 결과를 빼고 일반흡입독성실험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조 교수는 결국 2012. 4. 18. 산학협력단에는 어떠한 보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참여연구원 권정택에게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를 옥시 직원 최은규를 통해 옥시 측에 직접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식독성실험 결과를 담은 최종결과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옥시는 2014. 12. 29. 변호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옥시 측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조 교수는 직무와 관련해 1,2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고, 옥시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내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위조했습니다. 조 교수는 지난 9월 29일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범죄 사실들이 모두 받아들여져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2) 옥시와 조명행 · 유일재의 증거 위조, 그리고 김앤장의 불법 행위

조 교수와 유 교수의 위조된 최종결과보고서는 당시 옥시 측의 민·형사사건과 관련한 소송과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로 제출되어 쓰이게 됩니다. 옥시 측과 그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과 소속 변론팀 구성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에서도 이같은 정황이 제기된 바 있으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조명행 교수와 유일재 교수의 1심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 교수와 유 교수는 공판 과정 내내 옥시 측에 자신들의 중간 실험 결과와 최종 결과를 보고할 때 김앤장 변호사들이 함께 있었다는 주장을 펴 왔고, 관련 단서도 나왔습니다. 조 교수는 옥시에 이미 유해성을 경고했음에도 옥시와 보고서 검토를 담당한 김앤장이 실험 결과를 끼워 맞췄다는 것입니다.

조 교수의 법률대리인인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교수는 지난 2011. 11. 영국 본사와 싱가포르, 미국 측 옥시 관계자 및 한국법인 대표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전신에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이 연구에서 폐와 관련된 병변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2011. 11. 중간 발표 때부터 2012. 2. 최종 발표 사이에 옥시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⁷

김종민 변호사는 "권정택 연구원이 지난 2013. 4. 김앤장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김앤장이 독성실험 관련 원본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다."면서 "발송된 이메일에도 권 연구원이 김앤장 변리사에게 관련 데이터 전부를 복사해줬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장처럼 지난 2013. 7~8. 김앤장 측 김모 변리사가 연구팀에 보낸 이메일에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조건을 변경해 추가 실험을 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⁸ 그럼에도 김앤장은 2015년 말 옥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 피해자들의 폐손상이 '봄철 황사나 꽃가루, 흡연 등 때문'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분노를 산 바도 있습니다.⁹

또 지난 10. 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현우 옥시 전 대표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15차 공판에서 옥시 측이 옥시싹싹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쓰지 말도록 한 이메일을 숨겼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옥시의 사내변호사였던 김 모 변호사가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사실을 제보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¹⁰

⁷⁻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16. 5. 10. 방송 <권영철의 Why뉴스> 참조.
(<http://nocutnews.co.kr/news/4590664>)

⁸⁻ 포커스뉴스 2016. 5. 25. 기사, <'압도적 1위' 로펌 김앤장...끊이지 않는 구설수> 참조.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52500122627201>)

⁹⁻ 연합뉴스 2016. 9. 4. 기사, <檢 '옥시 증거은폐 의혹' 김앤장 '무혐의' 결론...윤리 논란 계속> 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4/020000000AKR20160904011100004.HTML>)

¹⁰⁻ 내일신문 2016. 10. 5. 기사, <옥시 '안전 우려' 이메일 숨겼다> 참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11940)

김 모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했던 증거는, 지난 2005. 12. 5. 옥시의 마켓팅 부서에서 옥시연구소에 문의한 라벨지의 문구 사용이 타당한지를 다룬 내용으로 당시 옥시싹싹을 책임지고 있었던 최은규 연구원이 "아이에게도 안심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아이라면, 어린 아기가 포함되는데, 살균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라며 이메일로 회신한 것입니다. 사실상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김 모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터진 지난 2011. 9.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대비를 하던 때, 무심코 쌓인 서류를 들춰보다 옥시연구소에서 이같은 이메일을 발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앤장이 의도적으로 이 이메일을 없앴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앤장이 옥시 사건을 책임지며 이런 서류들을 이미 다 검토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김 모 변호사가 지난 2011. 9. 당시 이메일이 발견된 옥시연구소를 방문했을 때도 김앤장의 인솔 하에 따라갔다고 밝혔습니다. 김 모 변호사는 휴대폰으로 이메일 내용을 찍어서 보관하다가 지난 5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보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증언과 제보가 사실이라면, 김앤장이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혐의를 넘어 옥시 측과 그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과 위조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결론

진정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김앤장 및 그 소속 변호사 등의 이같은 행위가 형법 제55조 1항의 증거위조죄 또는 위조증거사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초 검찰이 결국 김앤장의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옥시 관련 공판에서 나온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진술만 살펴 보더라도 정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에 과연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되묻게 됩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에서는 김앤장이 "직무를 수행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변호사법 제24조 1항, 의뢰인의 범죄나 위법 행위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하거나 이를 의심 받을 행위를 금한 변호사 윤리 장전 제11조 1항과 3항, 재판 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 제출을 금한 변호사 윤리 장전 제36조 1항과 2항도 위반했다고 판단합니다.

김앤장이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관련 법규 조문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안 된다."

변호사 윤리 장전 제11조(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한다.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한다.

②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 고발 또는 진정 등을 종용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변호사 윤리 장전 제36조(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①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011년 김앤장은 법제처로부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 작업을 위탁 받고 화학물질 생산업체의 정보제공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가능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서를 낸 바도 있습니다. 이는 2013년 즈음에 관련법 시행령에 반영됐습니다. 당시는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던 때로 김앤장은 옥시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 강령에 따라 '기본적 인권의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집단인지 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옥시싹싹 최종결과보고서 내용의 위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유리한 논문이나 보고서를 주문 제작하는 대형 로펌의 변론 방법에 대해 이번 기회에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옥시 보고서는 옥시에서 용역을 주고 뒷돈도 챙겨 준 것으로 드러났지만 대형 로펌들이 자체적으로 주문 제작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법조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수년 전 김앤장 소속 모 변호사는 한 로스쿨 특강에서 자신의 활약상에 대해 설명하던 중 "대기업 의뢰인에게 유리한 논문을 만들어내기 위해 급하게 교수를 섭외해 논문을 만들었고 결국 승소할 수 있었다"고 자랑스레 설명한 바 있다고도 합니다. 사측을 대리해 노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던 그 변호사는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어느 교수의 논문을 주문 제작했고 결정적 도움을 받았다고 털어 놓은 것입니다.¹¹ 이같은 법조계의 그릇된 관행도 이번 계기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2월 9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수는 모두 5,432 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131 명에 이릅니다(이는 정부의 공식 피해 접수기관인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이 국회에 보고한 피해 현황에 정부가 그동안 모니터링 대상에서마저 제외한 판정 이후 사망한 4단계 피해자의 현황을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종합한 결과임).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대참사입니다. 국내 법률 시장에서 규모와 매출은 물론, 영향력도 1위라고 평가 받고

¹¹- the L 2016. 5. 13.기사, <[the L의 눈] 김앤장과 변호사윤리...'주문제작' 보고서 경고음 켜졌다> 참조.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51216338260316>)

있는 김앤장이 사회적 책임은커녕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윤리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온갖 불법행위까지 서슴지 않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2011년 그 원인을 겨우 찾아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기업들이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옥시 영국 본사의 주도로 서울대와 호서대의 전문가들까지 가담해 그 증거들을 조작 은폐했고, 어처구니 없게도 대한민국 법원은 교통사고 쌍방 과실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 처리해 버렸습니다. 대참사는 그렇게 덮힐 뻔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그저 죽음의 생활화학물질 때문에 빚어진 참사를 넘어 법조계의 썩은 비리 사슬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까닭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제 더 이상 법조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고 법조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김앤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사회적 참사'를 마주한 우리 사회는 이제라도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대표해 진정인들은 필요하다면 추가 자료를 적극 제출하는 등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부디 '김앤장을 징계해 달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화답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불임) 피진정인 중 김앤장 소속 변호사 및 변리사 명단¹²

1. 장지수 변호사 (옥시 측 변론팀장)

△1966년 부산 출생 △1984년 경남고 졸업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8년 서울대 법과대학 학사 졸업 △1990년 대법원 사법연수원 19기
△1990~1993년 해군법무관 △1993년 김앤장 △1998년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
졸업 △1998년 일본 모리종합법률사무소 △2004~2006년 보건복지부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위원 △2006~2010년 한국소비자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10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위원회 위원 △2012~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2015년~현재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규약심의위원회 위원

2. 이성규 변호사

△1959년 서울 출생 △1982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4년 사법연수원 14기 △1985년~2005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 수원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고검 검사 등 역임
△2005년~ 김앤장 △2006년~현재 외교통상부 자체규제 심사위원회 위원

3. 조하윤 변호사

△1971년 서울 출생 △1990년 명신여고 졸업 △1995년 서울대 사법대
사회교육과 졸업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2~2009년 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서울중앙지검 검사 △2011년~ 김앤장 변호사 △2015년~ 법무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자문위원 △2016년~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2016년~ 한국식품산업협회 특수용도식품표시, 광고 심의위원회 위원

4. 이우진 변호사

△1975년 서울 출생 △1993년 세화고 졸업 △1999년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병원 수련의 △2000~2003년 공중보건의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8년 사법연수원 37기 △2008년 김앤장 △2015년 하버드 로스쿨

5. 이승윤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1999년 경희대 영문학과 졸업 △1999~2000년 삼성그룹 △2002~2007년
오비맥주 코리아 △2006년 서강대 경영대학원 졸업 △2010년 에모리 대학
로스쿨 졸업 △2011년~ 김앤장 변호사

6. 김유정 변호사 (미국 워싱턴주 변호사)

△1995년 UCLA 경제학 △2005년 워싱턴대 로스쿨 △2007년~ 김앤장 변호사

¹²⁻ 국회 특위 위원인 금태섭 국회의원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김앤장 홈페이지(Kim & Chang, <http://www.kimchang.com>) 및 로앤비 법조인명록(LAWnB, <http://www.lawnb.com>) 통해 신상 정보 조사.

7. 김재정 변호사 (미국 워싱턴, 메사추세츠, 뉴욕주 변호사)

△1994년 뉴욕대 법과대학 △1996~1997년 한국 국방부조달본부 법무실
외자계약담당변호사 △1997년~ 김앤장 변호사

8. 김정연 (김앤장 소속 변리사)